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2025.7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관리부

목 차



1 현장정보 전송제도 개요

2 현장정보 전송장치와 설치

3 현장정보 전송

4 위반 시 처벌기준

1 현장정보 전송제도 개요

1 현장정보 전송제도 개요

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추진배경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때 마다 인계·인수 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왔으나,**

- 자진신고(사용자입력) 방식만으로 의도적 법 위반 예방 한계

☑ 공공기관 건설폐기물 처리 비리('15), 경북 의성 쓰레기산('19) 등 **폐기물 무단 투기·방치 사례 발생**
→ 인계·인수 과정 보완 등 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1 현장정보 전송제도 개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란?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 수집·운반자 : 위치정보,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 영상정보 및 계량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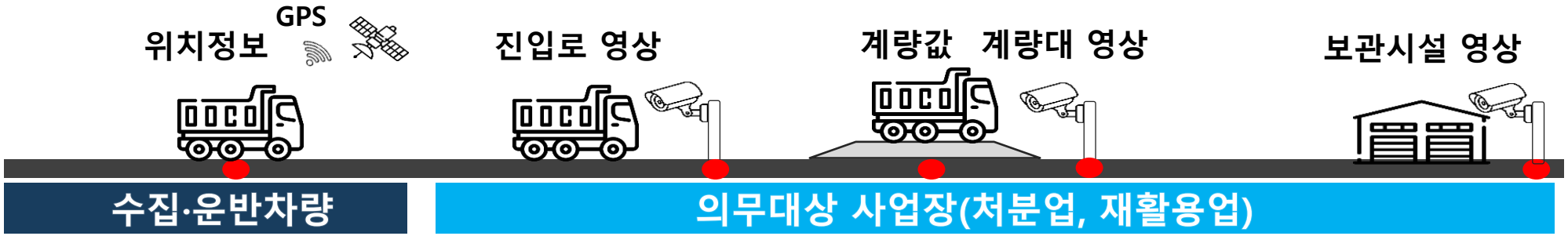

시행시기

대상 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출입폐기물**
대상 업체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의무 시행일	'22.10.1~	'23.10.1~	**'24.10.1~**

1 현장정보 전송제도 개요

제도 마련경과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법적근거 도입(「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19.11.26 개정, '20.5.27 시행)**
- **현장정보의 종류와 시행시기 결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22.1.7 개정·시행)**
  - (종류)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 (시행시기) '22.10월 건설 → '23.10월 지정 → '24.10 사업장일반
-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구축('19.7~'22.1) 및 운영('22~)**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22.6.9)**
  - 전송대상 현장정보의 범위, 전송장치의 종류와 규격, 전송주기 등 세부사항을 수록
-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23.10.1)**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24.8.30)**
- **사업장일반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24.10.1)**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25.3.19, `25.6.26.)**

1 현장정보 전송제도 개요

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현장정보 전송 대상자 :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올바로시스템에 전자인계서를 입력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자"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만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분업)**
- 폐기물관리법 동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외부 폐기물을 수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현장정보 전송 제외 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자가처리자)** (공동으로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공동 운영 기구를 포함)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연구기관 등 시험·연구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2 현장정보 전송장치와 설치

2 현장정보 전송장치와 설치

전송장치 종류 및 설치 - 수집·운반 하는 자

☑ **전송해야 하는 현장정보 :** 인계서 작성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위치정보**

☑ **전송장치 종류 및 설치**

구분		전용단말기형(펌웨어형)		휴대폰	비고
		고정형	탈부착형	현장정보 어플	
배출자	자가운반차량	○	○	○	
수집·운반업, 처분업, 재활용업	전용차량	○	X	X	
	임시차량	○	○	건설만 가능	
위험물질운반차량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기			중복사용가능

2 현장정보 전송장치와 설치

전송장치 종류 및 설치 - 처분·재활용 하는 자(계량시설 설치의무자)

☑ 전송해야 하는 현장정보 : 진입로·보관장소 영상정보, 계량시설 계량값 및 영상정보

☑ 전송장치 종류 및 설치

전송장치	설치위치	설치수량	비 고
자동전송단말기 (PC)	사업장	1대	자동전송프로그램 설치 필요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진입로	진입로별 1대	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지내 별도 구획된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구획된 장소의 출입구도 진입로로 인정
	보관장소	1대 이상	보관량이 가장 많은 대표 보관장소 (업종 및 영업대상폐기물별)
	계량시설	시설별 1대	계량값 자동 전송

※ 진입로 및 계량시설 영상정보를 1대의 CCTV로 촬영 가능한 경우 통합 설치 가능

2 현장정보 전송장치와 설치

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전송장치 종류 및 설치 - 처분·재활용 하는 자(계량시설 설치의무자 외)

☑ 전송해야 하는 현장정보 : 진입로·보관장소 영상정보, 계량값(예외적 전송)*

☑ 전송장치 종류 및 설치

전송장치	설치위치	설치수량	비 고
자동전송단말기 (PC)	사업장	1대	자동전송프로그램 설치 필요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진입로	진입로별 1대	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지내 별도 구획된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구획된 장소의 출입구도 진입로로 인정
	보관장소	1대 이상	보관량이 가장 많은 대표 보관장소 (업종 및 영업대상폐기물별)

※ 진입로 및 계량시설 영상정보를 1대의 CCTV로 촬영 가능한 경우 통합 설치 가능

* 계량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영상정보를 전송하지 않아도 되며, 예외적 전송 방법을 통해 계량값을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전송해야합니다.

2 현장정보 전송장치와 설치

전송장치 규격(PC)

항목	주요사항 및 세부사항	비고
중앙처리장치	Intel i7(11700T, 11700, 12700T, 12700), Ryzen7(5700, 5800)	
주기억장치(메모리)	16GB 이상	
네트워크카드	1G 1Port 이상	
보조기억장치(SSD)	240GB 이상	
보조기억장치(HDD)	진입로당 1TB 이상	
운영체제(OS)	Windows 10 이상(IoT, Home, Pro)*	
메인보드	중앙처리장치와 호환되는 메인보드	
인공지능가속기	VPU 700MHz 이상 또는 GPU 2560CUDA 이상	선택사항
사용자인터페이스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외부연결 인터페이스	시리얼 통신이 가능한 인터페이스(USB) : 계량대, PC	
	Lan : 인터넷	

* Windows 10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 지원 종료 시 Windows 11로 업그레이드 필요

2 현장정보 전송장치와 설치

전송장치 규격(CCTV)

항목		주요사항 및 세부사항	비고
영상	화소수	200만 화소 이상	필수
	해상도(권장)	Full-HD(1900×1080) 해상도 및 실시간 30fps 전송	
	컬러/흑백	컬러	
인터페이스		ONVIF Streaming Specification 지원	필수
전송지원방식		네트워크 방식(IP카메라)	필수
스트리밍		멀티 스트리밍(CCTV당 최소 3개 프로파일 지원)	
동작 환경 및 전원	동작온도/습도	-30℃ ~ +55℃ / 90% RH 이하	
	보관온도/습도	-30℃ ~ +60℃ / 90% RH 이하	
	전원	DC 12V / PoE(IEEE802.3af, Class3)	
설치 조건	화질	야간 등 취약시간대 선명한 화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도에 따라 적합한 등급의 적외선 카메라 또는 조명시설 설치	
	기타	카메라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하우징이나 서지(Surge) 보호기 등을 설치하여 낙뢰 등에 대비	

2 현장정보 전송장치와 설치

진입로 CCTV 설치기준

- 카메라의 화각은 사업장의 차량 진입로를 향하도록 하고, 진입하는 차량의 정면 또는 후면을 최대한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차량 진·출입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
- 차량은 영상 중앙에 위치되어 정면 또는 후면이 화면의 1/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 카메라는 야간에도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
- 이미지 촬영 시 해상도는 1920×1080, 저장시1280×720, 영상 코덱은 H.265(또는H.264) 이상, MJPEG을 지원
- 현장 상황에 따라 해당 위치에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가능한 유사한 위치에 차량번호판이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
- **진입로 CCTV 적합 설치 예시**



2 현장정보 전송장치와 설치

계량시설 CCTV 설치기준

- 계근대에 진입하여 계근중인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차량운행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
- 카메라 위치는 계근대 앞부분 모서리를 기준으로 차량의 정면 또는 후면이 화면의 1/2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카메라는 야간에도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
- 이미지 촬영 시 해상도는 1920×1080, 저장시1280×720, 영상 코덱은 H.265(또는H.264) 이상, MJPEG을 지원
- 현장 상황에 따라 해당 위치에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가능한 유사한 위치에 차량번호판이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
- 취득한 번호판 이미지가 가로 180pixel 이상으로 촬영되도록 화각과 배율을 조정하여 설치
- **계량시설 CCTV 적합 설치 예시**



2 현장정보 전송장치와 설치

☑ 진입로, 계량시설 CCTV 부적합 설치 예시



(야간) 번호판 식별 불가	화각, 배율 조정 필요	배율 조정 필요

3 현장정보 전송 방법

3 현장정보 전송방법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구분

<자동전송>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연결을 통해
위치정보, 영상정보, 계량값을 자동으로 전송

<예외전송>

자동전송 외의 방법으로 영상정보, 계량값을 직접 전송
(**일부 항목은 사전승인 필요**)

<전송제외>

특수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
해당 위치정보, 영상정보 전송 제외

<대체전송>

현장정보 **전송장치가 고장**났을 때,
장애신고하고 위치정보, 영상정보, 계량값 대체전송

3 현장정보 전송방법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주기

항 목		기록주기	전송주기	비고
위치정보		10초 (1초 ~ 30초 사이에서 변경 가능)	60초 (1초 ~ 60초 사이에서 변경 가능)	위험물 차량은 약 3일 소요
계량값	자동전송	폐기물을 계량할 때마다	폐기물을 계량한 즉시	차량용 계량시설 보유자
	예외적 전송	폐기물을 계량할 때마다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차량용 계량시설 미보유자 (소형저울 포함)
영상정보	진입로	차량이 진입할 때마다	영업일 기준 2회/일(12시, 18시)	인터넷 미보급 지역 1개월 이내 예외전송
	계량시설	폐기물을 계량할 때마다	수집·저장 시점으로부터 1분이내	
	보관시설	영업시간 기준 1시간 주기	영업일 기준 2회/일(12시, 18시)	

☑ 영업시간(營業時間) : 법이나 관습에 의하여 영업을 하도록 정해진 시간. 영업하기 위하여 점포의 문을 연 때부터 닫을 때까지의 시간

☑ 영업일(營業日) :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날

3 현장정보 전송방법

현장정보 예외적 전송 방법 - 계량값

계량값 예외적 전송 대상	예외적 전송 절차		계량방법	예외적 전송 방법	예시
	계량시설 설치의무자	그 외의 자			
소형저울 등 계량증명서 발급기능이 없는 경우	예외적 전송 미대상	폐기물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 전송	처리자 보유 계량기로 측정	계량값 표출화면 사진* 전송 * 현장정보 앱 카메라 기능으로 실시간 촬영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예외적 전송 신청서* 제출·승인 후 폐기물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 전송 * 증빙자료 : 계량시설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 전송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	계량전표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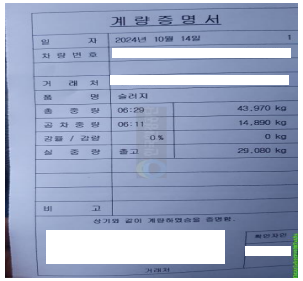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운송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예외적 전송 신청서* 제출·승인 후 폐기물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 전송 * 증빙자료 : 선박이 수집·운반차량으로 명시 되어있는 서류 (인허가증,배출처리계획서 등)		검량사가 적재무게 검량	검량증명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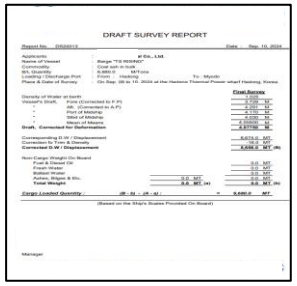

3 현장정보 전송방법

현장정보 예외적 전송 방법 - 계량값

계량값 예외적 전송 대상	예외적 전송 절차		계량방법	예외적 전송 방법	예시
	계량시설 설치의무자	그 외의 자			
배출자 계량시설에서 계량당시 사진을 전송 할 수 있는 경우 (차량 계량시설)	예외적 전송 미대상	폐기물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 전송	배출자 계량시설에서 측정	배출자 계량전표, 계량 당시 차량번호 및 계량시설이 표시되는 사진* 전송 * 현장정보 앱 카메라 기능으로 실시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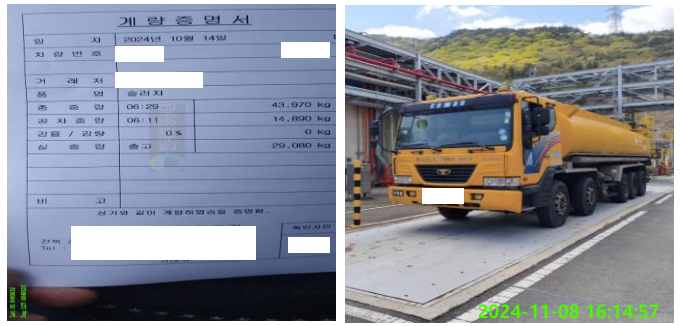
배출자 계량시설에서 계량당시 사진을 전송 할 수 있는 경우 (차량 계량시설 외)	예외적 전송 미대상	폐기물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 전송	배출자 계량시설에서 측정	배출자 계량전표, 수집·운반 차량*, 계량 당시 폐기물 및 계량시설이 표시되는 사진* 전송 * 현장정보 앱 카메라 기능으로 실시간 촬영	

3 현장정보 전송방법

현장정보 예외적 전송 방법 - 계량값

계량값 예외적 전송 대상	예외적 전송 절차		계량방법	예외적 전송 방법	예시
	계량시설 설치의무자	그 외의 자			
동일한 사업부지에 소재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예외적 전송 미대상	폐기물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 전송	배출자 계량시설에서 측정	계량전표 관리프로그램에서 내려 받은 전자파일전송 (EDI 전송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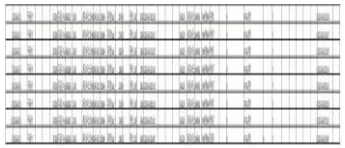
				배출자 계량전표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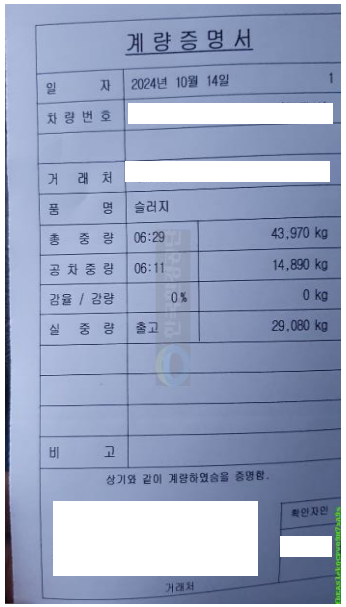
국가보안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예외적 전송 미대상	예외적 전송 신청서* 제출·승인 후 폐기물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 전송 * 증빙자료 : 국가보안시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배출자 계량시설에서 측정	배출자 계량전표 전송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예외적 전송 미대상	예외적 전송 신청서* 제출·승인 후 폐기물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 전송 * 증빙자료 : 위탁시설인 경우 위탁계약서 (자체 운영 시 증빙자료 미첨부)	배출자 계량시설에서 측정	배출자 계량전표 전송	

3 현장정보 전송방법

현장정보 예외적 전송 방법 - 계량값

계량값 예외적 전송 대상	예외적 전송 절차		계량방법	예외적 전송 방법	예시
	계량시설 설치의무자	그 외의 자			
계량값 일일총량으로 산정하는 경우	예외적 전송 신청서*제출·승인 후 폐기물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 전송 * 증빙자료 : 고시 제3조제3항에 해당되는 서류 (동일부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집·운반차량 정보 및 GPS등록내역 등)		제품 역산,다량 계량값 합산 등	일일총량 산정 증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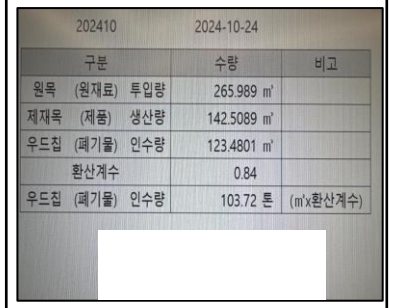
밀폐된 배관으로 폐기물을 이송하는 경우	예외적 전송 신청서*제출·승인후 폐기물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 전송 * 증빙자료 : 밀폐된 배관이 수집·운반차량으로 명시되어있는 서류 (인허가증,배출처리계획서 등)		유량값 등을 활용한 계량값 산정	계량값 산정 증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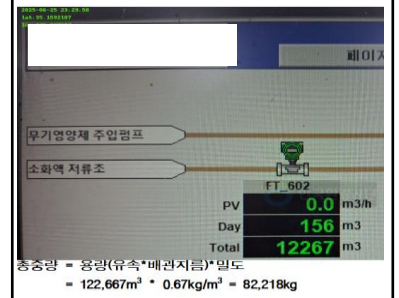
폐전주, 폐금속용기류 등 폐기물 1개당 중량이 일정한 경우	예외적 전송 신청서*제출·승인 후 폐기물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 전송 * 증빙자료 : 폐기물 종류와 1개당 중량이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폐기물수량에 1개당 중량을 곱하여 산정	계량값 산정 증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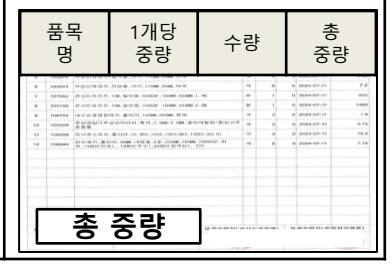

3 현장정보 전송방법

현장정보 예외적 전송 방법 - 영상정보

영상정보 예외적 전송 대상	예외적 전송 절차		예외적 전송 방법
	계량시설 설치의무자	그 외의 자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미제공 지역	예외적 전송 신청서 제출·승인 후 폐기물 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업로드		자동전송단말기(PC)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1개월 이내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자료실 - [사용자 매뉴얼]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미제공 지역 현장정보 전송방법 참조

3 현장정보 전송방법

현장정보 전송 제외

☑ **제외 절차 : 전송제외 신청서 제출, 검토·승인 받은 경우에 한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않아도 됨**

☑ **제외 대상(위치정보)**

위치정보 전송제외 대상	제외 신청 시 증빙자료 예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용역계약서 등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한국조폐공사에서 배출되는 화폐 등 **보안제품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계약서, 배출처리계획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철도차량, 선박, 밀폐된 배관, 컨베이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단, 일부 구간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해당 구간의 위치정보를 전송하여야 함)	배출처리계획서,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집 · 운반차량을 선박에 선적하여 이동하는 경우 (선적하여 이동하는 구간에 한정)	배출처리계획서,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동일한 사업부지에서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장비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수집운반증(차량번호), 배출처리계획서 등 운송수단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
전주용철거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차량등록증, 배출처리계획서 등 운송수단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

3 현장정보 전송방법

현장정보 전송 제외

☑ 제외 대상(영상정보)

구분	영상정보 전송제외 대상	제외 신청 시 증빙자료 예시
진입로	**동일한 사업부지에 소재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등 동일 부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철도차량, 선박, 밀폐된 배관, 컨베이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경우	수집운반증(차량번호) 등 제외하고자 하는 운송수단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지식산업센터 등과 같은 **다층형 집합건축물**에 소재하여 수집·운반차량이 처리사업장까지 진입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현장 방문하여 확인 필요
	폐기물 처리사업장에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설비 신설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	센터에서 현장 방문하여 확인 필요
보관장소	사일로, 저장탱크, 저장조 등 **폐기물의 보관상태 촬영이 곤란한 저장시설 만 보유**한 경우	인허가증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현장확인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경우	인허가증 등 보관장소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허용보관량 : 0, 기재사항없음 등)
	퇴비화 시설 **등 보관시설이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이용 되는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등
	폐기물 처리사업장에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설비 신설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	센터에서 현장 방문하여 확인 필요

3 현장정보 전송방법

현장정보 전송 장애 신고

장애 신고대상	장애 신고 절차
장치의 고장이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 및 대체 전송** ※장애신고시 장애에 대한 증빙자료를 복구완료전까지 제출해야 함 ↓ **장애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장치 수리 또는 교체 등 조치**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 ↓ **복구 완료 즉시 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

현장정보 대체 전송

☑ 장애 발생 신고 후 자동전송하지 못하는 현장정보 **대체전송** 필요

영상정보 및 계량값			위치정보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	
현장정보 앱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 후 전송 or 사진을 2일 이내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사진 전송	인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 계량증명서 전송 (영상정보 같음)	영업일 기준 1일 1회 전송	차량운행 시 현장정보 어플로 전송

4 위반시 처벌기준

4 위반시 처벌기준

(행정처분)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행정처분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벌칙)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4의4(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감사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한국환경공단법:법률 제13879호)
K-eco aims to contribute to eco-friendly development of Korea through the effective oper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programs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improve the environment, facilitate resource recycling and respond to climate change. (Law No. 13879, the K-eco Act)